

## 제 11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 제 11.1 조 일반원칙

1. 제11.2조에 더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부속서 11가에 따라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목표 및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sup>1)</sup>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1.2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1.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해 자연인이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그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항은 부속서 11가의 제3절에 따른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11.3 조

####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1장(투명성), 제22장(협정의 운영), 제23장(분쟁해결), 제24장(예외) 및 제25장(최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규정된 조항을 포함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관련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11.4 조

#### 일시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및 부록 11가-3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불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한한다.

## 제 11.5 조 정보의 제공

1.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일시입국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이 양 당사국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식으로, 작성·공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한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의 허용에 대한 자료를 자국 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는 각 직업, 직종 또는 활동 별 해당 자료도 포함된다.

## 제 11.6 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라. 상호 관심이 있는 모든 조치

## 제 11.7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해 제23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 최종 판정을 하지 않았고,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8 조**  
**신청 절차의 투명성**

1.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2.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 상태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1.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무역,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과 같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자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

다.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던 자.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 자

**임원**이란 그 조직의 경영을 주로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상위급 임원·이사회 그리고/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기업인을 말한다.

**독립전문가**란 다음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서비스공급 자영업자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인<sup>2)</sup>과 서비스공급 계약에 따라 계약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다. 서비스가 공급되는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노동분쟁**이란 고용의 조건과 관련한 노조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

**관리자**란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 또는 하부조직을 주로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며, 고용·해고 또는 승진 또는 휴가의 허가와 같은 그 밖의 인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란 다음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방대한 전문지식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적용, 그리고

---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연인 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자국 영역에 들어온 독립전문가가 관련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국의 독립전문가만을 허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호의적 고려가 부여된다. 이 각주에 언급된 "협의"라는 용어는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 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최소한 4년의 학업을 요구하는 중등과정 후의 학위 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당하는 것을 취득<sup>3)</sup>

전문가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국제시장에서의 그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업의 과정과 절차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또는 지식을 보유한 기업인을 말한다. 전문가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 의도 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3)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부록 11가-2의 제2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려는 페루 국민을 위한 요건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서 정의된 것이다.

**부속서 11가**  
**일시입국의 범주**

**제 1 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1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1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 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을 것

나호에 언급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고,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포함하여 그 회사의 설립체로 파견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일시입국의 사전 요건으로서의 노동계약승인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노동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절의 목적상, **설립**이란 경제 활동의 수행을 위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sup>4)</sup>,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

4) 법인의 “구성” 및 “인수”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제 4 절 전문직 종사자

1. 각 당사국은 독립전문가로서든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든 부록 11가-2에 따라 전문적 수준에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발급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적인 자격증명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 하려는 기업인에게 직업 또는 활동의 수행을 위한 특정 법령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의 노동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부록 11가-1

### 상용 방문자

부속서 11가의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용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회의 및 협의

회의, 세미나 또는 학회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기업인

#### 연구 및 설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 성장, 제조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 마케팅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 컨벤션에 참석하는 당사국의 무역박람회 및 홍보인력

####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품배달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그 계약을 협상하는 당사국의 판매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구매를 하는 당사국의 구매자

### *유통*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의 원활화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통관 중개인

### *판매 이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시입국을 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증이나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훈련하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한 당사국의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그리고 감독자

### *일반 서비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관리 및 감독 인력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가 또는 참여하는 당사국의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가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당사국의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사 대행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

행업자)

요리 행사나 박람회에 참가 또는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 협의하는 당사국의 조리사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번역가 또는 통역가

회의, 세미나 또는 학회에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사국의 가맹점 거래자 및 개발업자

**부록 11가-2**  
**전문직 종사자<sup>5)</sup>**

**제 1 절**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배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5) 공인회계사, 건축가 및 변호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시험, 국가건축사자격시험 그리고 국가변호사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페루 국민에게도 응시가 허용된다.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개발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환경 컨설턴트(계약서비스 공급자만 양허한다)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9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40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금융관리 컨설턴트(계약서비스 공급자만 양허한다),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 제 2 절

1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5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7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8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9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10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12	컴퓨터 보안 전문가
13	웹 기획자
14	멀티미디어 기획자
15	웹마스터
16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17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18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19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번역가 및 통역가
21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22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23	인테리어 디자이너
24	조리사 <sup>6)</sup>
25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26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

6) 페루에 대해서는, 일시입국을 하려는 대한민국 조리사에 대한 요건은 페루의 출입국 법령에 정의된 것이다.

## 부록 11가-3

### 체류 기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부속서 11가의 제1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1가의 제2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1가의 제3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1가의 제4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전문직 종사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려는 페루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페루에 대해서는,

범주	이주 조건	체류 기간
상용 방문자	사업	183일까지
무역업자	사업	183일까지
투자자 (투자를 하는 과정의)	사업	183일까지
투자자 (독립)	투자자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기업 내 전근자	근로자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독립)	독립전문가	1년까지 가능하나, 입국 허용의 동기가 되었던 조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요청된 횟수만큼 연이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지정 노동자	6개월까지